

국제법평론회 논문심사 규정

2004년 7월 7일 채택
2010년 2월 4일 개정
2017년 4월 29일 개정
2020년 1월 10일 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국제법평론회(이하 본회라 한다)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본회 학회지인 『국제법평론』을 비롯한 연구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하여 기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논문기고 자격) ① “테마기획논문”과 “일반논문”的 제출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다.

② “연구논문”的 제출자격은 대학원 재직(박사과정 및 석사과정)으로 한다.

③ 실무가 또는 실무경력자가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, 그 원고를 일반논문 또는 연구논문으로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3 조(심사대상) ①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간행물에 게재하고자 기고된 원고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.

② 기고된 원고는 독창적인 것으로서 이미 발간된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.

③ 기고된 원고는 본회가 정한 논문기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 편집위원장은 기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의 기고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원고의 기고자는 본회가 정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심사위원의 위촉)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접수하면 해당 원고의 필자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편의 원고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단, 심사위원은 자신의 원고를 심사할 수 없다.

② 심사위원은 본회의 회장단과 이사 전원 및 「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회 규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「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회 규정」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 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5 조(심사절차) ① 심사대상 원고는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

다.

② 심사위원은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한다.

1. 수정이 필요 없을 경우: 게재
 2. 간단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: 수정 후 게재
 3. 중요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: 재심사 후 게재
 4.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: 게재 유보
- ③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기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경우 기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⑤ 기고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에 대하여 반론권이 있다.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고자에게 회신한다. 필요한 경우,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의 의견을 구한다.

제 6 조(심사기준) 논문 또는 연구노트의 게재 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
2. 연구 주제의 창의성, 적실성, 중요도
3. 연구 내용의 논리성, 충실통
4.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, 완성도

제 7 조(논문게재료)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기고자는 본회가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비밀유지)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기고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기고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.
③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